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상호·대표자)	사단법인 육아오전쟁남북인사가족 협의회 (대표 이미일)		법인등록번호	114121-0005552
주소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28(청량리동)			
직업		사무실 주소		
전화	(휴대폰) (주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소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연락처 02 594 4884)			

2. 피고소인

성명	송갑석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국회의원	사무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화	(휴대폰) (주택) (사무실)			
기타사항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자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개요

피고소인은 대한민국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선후 첫 법률안으로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남북자’ 표현을 ‘전시실종자’ 와 ‘전후실종자’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라 보도되었습니다(중제1호증, 기사문 참조).

피고소인은 역사적 사실로 엄존하는 ‘남북자’의 존재를 부정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남북피해의 진상규명과 구명에 평생을 바쳐 온 유가족 및 유가족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북한의 전쟁 범죄·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방향에서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언행을 공개적으로 벌인 것으로, 국가보안법, 형법에 모두 위반되므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남북’ 사실의 부정

2010년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그 입법 목적을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제2조에서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남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그 입법 목적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어서 제2조에서는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전적인 의미로서 “실종자”란 “1.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2. <법률> 소재 및 생사를 알 수 없어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nhn?query=%EC%8B%A4%EC%A2%85%EC%9E%90>).

피고소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된 자”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게 된 자”를 지칭하는 “납북자”란 법령 용어를 “종적을 잊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뜻의 “실종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실종자의 의미에는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속박되었다는 뜻과, ②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한 주체가 북한이라는 뜻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 두 법령의 입법 목적과 법적용 대상을 규정하는 핵심 용어인 “납북자”를 그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실종자”란 용어로 변경한다는 것은, 위 두 법령의 입법 목적과 정의 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결국 위 두 법의 존립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피고소인이 “납북자”를 “실종자”로 변경하자는 법안 발의를 하게 된 것은 6·25 전시와 전후에 걸쳐 북한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속박된 자들이 존재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연구와 실증을 통해 10만에 달하는 한국인 납북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납북자들을 집단 학살한 증거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피고소인의 납북 사실 부정은 북한 정권의 납북 사실 부인, 책임회피와 같은 궤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 사자명예훼손

피고소인은 “남북자”의 존재를 부정하며, 이들을 “실종자”라 허위 적시 함으로써, 고인이 된 남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고인이 된 남북자들은 연유를 알 수 없이 종적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남치된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나 반인도범죄의 희생자인 그들을 스스로 사라져버린 사람들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고인의 주요한 정체성에 관련된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라. 명예훼손

피고소인은 또한 남북피해자 가족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남북피해자 가족들은 일생을 바쳐 남북가족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60년에 걸친 평생의 노력으로 유가족 단체가 만들어졌고, 사료 발굴·진상 규명에 진척이 있었으며, 관련 입법도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남북” 사실 자체를 허구로 취급하는 언사를 공개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남북이 허구라면 남북 사료 발굴과 진상규명에 일생을 바쳐온 유가족들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찬 것이 되고 맙니다. 아울러 남북피해자 가족 단체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사기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이어서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턱없는 허위 공격으로 거짓 인생 취급을 받게 된 셈입니다. “남북자”가 아니라 “실종자”라는 피고소인의 공개적 언명은 그 자체로 생존남북자와 남북자 가족 및 남북자 가족 단체를 ‘거짓에 훌린 존재’로 못박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마.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소인은 전대협 4기 의장 출신으로 학생운동 당시 과격 투쟁 노선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은 자입니다. 피고소인의 당시 투쟁 노선과, 전대협 조직의 노선, 그 조직에 깊이 침투된 사상 등이 북한 정권과 깊이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주지의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번 입법 발의는 자연스럽게 피고소인의 과거 행적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과연 피고소인의 친북적, 종북적 의식은 얼마나 교정되었는가? 대한민국 법에서 “납북자”를 지워버리고 모두 “실종자”로 대체해 버리자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6·25 이래 일관되게 납치 범죄를 부정해 온 북한 정권의 태도에 동조하는 것이며, 북한 정권의 거짓을 지적해 온 민관을 아우르는 자유민주 진영 전체의 노력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없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8. 결론

피고소인은 대한민국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선후 첫 법률안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납북자’ 표현을 ‘전시실종자’ 와 ‘전후실종자’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라 보도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역사적 사실로 엄존하는 ‘납북자’의 존재를 부정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납북피해의 진상규명과 구명에 평생을 바쳐 온 유가족 및 유가족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북한의 전쟁 범죄·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방향에서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언행을 공개적으로 벌인 것으로, 국가보안법, 형법에 모두 위반되므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증제1호증

기사문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1부 |
| 1. 법인등기부 | 1부 |
| 1. 위임장 | 1부 |

2018. 8. 14.

고소인 사단법인 육이오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인)



대검찰청 귀중

특종에 강한 정통시사신문 e조은뉴스



송갑석, 당선 후 제1호 법안, 일명‘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발의

-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개성공단 민간기업·이산가족 아픔 헤아리는 등 7종 평화 법안 발의

조순익 기자 inhyangin@naver.com



▲ 송갑석 국회의원

증제 / 호종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서구갑)이 당선 후 제1호 법안으로 일명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을 대표발의 한다.

송갑석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드리운 긴장관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의 온기가 싹트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 대립에서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기에 남북평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마중물로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통일정책’을 발표하는 등 남북 평화 정책에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7대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를 협력 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기금확대 사용을 가능케 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에 사용 가능한 협력 분야는 문화, 학술, 체육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도록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두 번째 법안은 남북 교역의 중단으로 인한 민간 기업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세 번째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으로 그 동안 교류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던 이산가족들이,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해 전화나 이메일·화상 상봉의 방법으로 상시적 만남이 가능토록 하도록 하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타 법안으로는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에 대해 5년 단위의 기본·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사자유해 발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과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하는 법안이 있다.

또한 ‘남북자’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서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 참조 : 송갑석 국회의원대표발의‘한반도 평화 남북 7법’ >

법안 명	제안 주요 내용
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도록하기 위해 법률에 정경분리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공고한 남북경제협력 구축
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컴퓨터·전화·우편·팩스 등 방법을 통하여 직·간접적 의사를 교환하고,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한 화상상봉을 가능하게 함
4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 기본 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사자유해 발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화해를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하기 위함
6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자' 표현을 '전시실종자'와 '전후실종자'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법률상 용어로인한 남북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
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입력시간 : 2018년 08월12일 [23:12:00]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000555
등록번호	114121-0005552

명 칭	사단법인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변경 등기
주사무소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변경 등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28(청량리동)	2011.10.31 도로 명주소 2013.07.10 등기

목 적

이 범인은 6.25전쟁 때 북한으로 납치되어 간 분들의 생사확인과 생존자들의 인권보장과 상봉 및 자유 송환을 목적으로 한다.	<2003.03.26	변경 등기
위 목적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2003.03.26	변경 등기
1. 6.25전쟁 때 북한으로 납치되어 간 분들의 가족 찾기	<2003.03.26	삭제 등기
2.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행정지원과 정보교환	<2003.03.26	삭제 등기
3. 생사확인과 상봉 및 자유 송환	<2003.03.26	삭제 등기
4. 회원간 친목과 상부상조	<2003.03.26	삭제 등기
5. 기타 이 범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2003.03.26	삭제 등기
이 범인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6.25전쟁 때 북한으로 납치되어 간 분들의 생사확인과 생존자들의 인권보장과 상봉 및 자유 송환을 목적으로 한다.	<2003.03.13	추가 등기
이 범인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6.25전쟁 때 북한으로 납치되어 간 분들의 생사확인과 생존자들의 인권보장과 인도주의적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2011.07.19	변경 등기
1. 6.25전쟁 때 북한으로 납치되어 간 분들의 가족 찾기		
2.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행정지원과 정보교환		
3. 생사확인과 상봉 및 자유 송환	<2011.07.19	변경 등기
3. 생사확인과 인도주의적 조치	<2011.07.19	삭제 등기
4. 회원간 친목과 상부상조	<2011.07.19	삭제 등기
5. 기타 이 범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2011.07.19	변경 등기
4. 기타 이 범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2011.07.19	변경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이미일 49020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5길 11, 301호(논현동, 힐스빌5차) 대표권한규정 이사 이미일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5일 등기
이사 김지혜자 421109-*****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5일 등기
이사 서정식 350511-*****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5일 등기
이사 이경찬 391118-*****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8년08월14일 12시59분37초

등기번호	000555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5일 등기
이사 이상일 490430-*****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5일 등기
이사 이성의 481225-*****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5일 등기
이사 이태영 410806-*****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5일 등기
이사 전태희 420312-*****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5일 등기
이사 하영남 500210-*****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5일 등기
이사 김재조 410418-*****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5일 등기
이사 김영희 480506-*****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5일 등기
이사 김남주 401130-*****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5일 등기
이사 최창림 370422-*****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5일 등기
이사 유재민 420228-*****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5일 등기

기타사항

설립허가 연월일

2001. 9. 6.

자산의 총액

금 50,000,000원

출자의 방법

1. 회비 및 특별비
2. 찬조금 및 후원금
3. 기타 수익금

법인설립연월일

2001년 09월 24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01년 09월 24일 등기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8년08월14일 12시59분37초

등기번호	000555
------	--------

* 본 등기기록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철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8년08월14일 12시59분37초

법률사무소 太 佑

고소대리인 선임신고서

사건	
고소인 피고소인	사단법인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송갑석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변호사를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2018. 8 . . .

위임인 사단법인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28

대표 이미일

고소인의 대리인 : 변호사 도태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띠크모나코 807호

전화 : 02-594-4884, 팩스 : 02-594-4242

핸드폰 : 010-8860-6907

대검찰청

귀중

